※참고 번역

세타가야구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남녀 공동 참획과 다문화 공생을 추진하는 조례 시행규칙

2018 년 3 월 30 일 규칙 제 50 호

개정: 2020 년 3 월 31 일 규칙 제 44 호; 2020 년 7 월 31 일 규칙 제 91 호; 2022 년 3 월 31 일 규칙 제 29 호

세타가야구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남녀 공동 참획과 다문화 공생을 추진하는 조례 시행규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세타가야구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남녀 공동 참획과 다문화 공생을 추진하는 조례」(2018 년 3 월 세타가야구 조례 제 15 호.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세타가야구 남녀공동참획·다문화공생 추진심의회의 위원)

조례 제 10 조 제 1 항에 규정된 세타가야구 남녀공동참획·다문화공생 추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6 명 이내

(2) 구내에 주소를 둔 자, 관계 단체 등의 대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 9 명 이내

제 3 조(심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

심의회에 회장과 부회장을 둔다.

2.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4. 회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5.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심의회의 소집)

심의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 5 조(심의회의 회의)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2. 심의회의 의사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심의회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회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 6 조(심의회의 분과회)

조례 제 10 조 제 5 항에 따라 심의회에 분과회를 둔다.

2. 분과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분과회에 분과회장을 두며, 심의회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4. 분과회장은 분과회를 소집하고 분과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분과회의 조사·심의 경과와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한다.

5. 분과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회 소속 위원 중에서 분과회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분과회 의사의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에는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을 준용한다.

제 7 조(고충 제기 등의 절차)

조례 제 11 조 제 1 항에 따른 고충 제기, 의견 제시 또는 상담(이하 통칭하여 “고충 제기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고충 제기·의견 제시·상담서(제 1 호 양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구청장은 고충 제기 등의 처리를 마친 경우 고충 제기 등 처리 결과 통지서(제 2 호 양식)를 통해 해당 고충 제기 등을 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일부 개정 [2020 년 규칙 제 91 호]

제 8 조(세타가야구 남녀공동참획·다문화공생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

조례 제 12 조 제 1 항에 규정된 세타가야구 남녀공동참획·다문화공생 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을 둔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은 고충처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4.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고충처리위원회의 소집)

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0 조(고충처리위원회의 회의)

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 2 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제 11 조(연차 보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에 한 번 고충 제기 등의 처리 상황을 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사무 처리)

심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는 생활문화정책부 인권·남녀 공동 참획과에서 처리한다.

일부 개정 [2020 년 규칙 제 44 호; 2022 년 규칙 제 29 호]

제 13 조(위임)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년 3 월 31 일 규칙 제 44 호)

이 규칙은 2020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년 7 월 31 일 규칙 제 91 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년 3 월 31 일 규칙 제 29 호)

이 규칙은 2022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번역본입니다. 양식을 제출할 때는 일본어 양식을 사용해 주십시오.

제 1 호 양식(제 7 조 관련)

고충 제기·의견 제시·상담서

작성일: _____년 ____월 ____일

세타가야구청장 귀하

신청인 또는 상담자

주소: _____

성명: _____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 단체명,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_____

「세타가야구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남녀 공동 참획과 다문화 공생을 추진하는 조례」 제 11 조 제 1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충 제기, 의견 제시 또는 상담을 신청합니다.

신청 취지	
배경·경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다른 기관에 대한 상담 등의 상황	□ 상담하고 있음　□ 상담하고 있지 않음 (다른 기관에 상담 중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담처를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특기사항 (연락 시 배려가 필요한 사항 등)	

참고 번역본입니다. 양식을 제출할 때는 일본어 양식을 사용해 주십시오.

일부 개정 [2020 년 규칙 제 91 호]

제 2 호 양식(제 7 조 관련)

고충 제기 등 처리 결과 통지서

문서번호: _____

작성일: _____년 ____월 ____일

수신: _____

세타가야구청장 ［직인］

_____년 ____월 ____일자로 접수한 고충 제기 등의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기록

1. 고충 제기 등의 취지

2. 조사 결과, 조치 내용 등